

의안번호	2202932
의 퇴 인	허영 의원
회 답 일	2024. 9. 4.
추계번호	24B2988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완료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제2항)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와 사업의 내용, 제2항·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43조의3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신설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댐관리청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댐사용권자의 출연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4. 제43조의4에 따른 차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댐관리청¹⁾,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함(제3항) 1.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제2호에서 정하는 댐사용권자를 제외한다),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가.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나.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사용권자: 전전년도의 제35조 제1항²⁾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서 전전년도의 제36조³⁾에 따른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43조의5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의 구성·운영) 신설	환경부장관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이라 한다)에 댐주변지역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에 댐주변지역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3조의3(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신설	
3	안 제43조의5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의 구성·운영) 신설	

-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 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 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세 사유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안 제43조)

- 현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현행법 제43조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종합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개정안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와 사업의 내용, 종합계획의 내용 및 수립 시기·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개요는 참고자료를 참조
 - ※ [참고자료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 [참고자료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 ※ [참고자료 3] 댐별 출연금 세부현황(2024년도)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 제43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현행법과 동일하게 용수판매 및 발전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제1항 및 제2항),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여(제3항)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변동되는 댐사용권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⁵⁾하므로 이에 따른 출연금 규모 및 특별회계의 세출 규모를 구체화하기가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현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조성 및 배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댐별 생·공용수판매액의 22%, 발전판매액의 6%를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음

□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의 구성·운영(안 제43조의5 신설)

- 개정안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댐주변지역사업단의 구성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업단의 규모, 필요 인력,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함
 - 참고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심의, 지원금 배분, 기타 필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별로 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⁶⁾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5)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개별 댐별로 건설비 등 원가에 따른 댐용수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이 균등한 물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다목적댐의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반영하여 동일한 댐용수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건설비 회수 여부가 가능한 일부 댐을 구체화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6) 지원사업협의회: 지원사업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댐별 설치
 - (구 성) 위원장(시·군·구 부단체장), 위원(공무원, 주민대표, 지사 직원 등)
 - (역 할) 사업계획(기타지원 제외) 심의, 지원금 배분, 기타 필요사항
 - 기타지원사업은 K-water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수자원환경부문이사)에서 심의·의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⁷⁾

□ (사업목적)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도모⁸⁾

□ (대상 댐) 저수면적 2백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인 댐 및
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

* (지원대상) 환경부 소관 37개 댐

다목적댐(20)	홍수조절댐(3)	용수댐(5)	용수댐(9)
소양강, 충주, 횡성, 대청, 용담, 부안, 보령,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군위, 부항, 성덕, 보현산, 영주, 섬진강, 주암, 장흥	평화의댐, 군남 한탄강댐	영천, 운문, 사연, 대곡, 수어	달방, 광동, 감포, 안계, 대암, 선암, 연초, 구천, 평립

- 용수댐 9개소는 시행령 개정(시행일 : '24.5.28.)으로 '25년부터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 (지자체댐) 용수댐 97개 중에서 지원대상 3개 댐이며, 실제 지원하고
있는 댐은 2개 댐(동북댐, 회야댐)

□ (사업구역) ① 댐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② 댐 발전소 반경 2km 이내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및 댐관리자 인정지역(수물민이주단지 등)

* '24년 기준, 전국 246개 기초지자체 중 59개 대상(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
으로 추가되는 용수댐 9개소의 지원사업 구역 확정시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원조성 및 배분)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댐별 생·공용수판매액 22%,
발전판매액 6%를 출연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 재원 조성

- 조성된 전체 출연금을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 댐별로 배분

* '03~'04년 용수매출 10~15% 발전수익 3%(연 150억↑), '05~'21년 용수매출
20%, 발전수익 6%(연 600억↑), '22~'23년 용수매출 22%, 발전수익 6%(연
750억↑)으로 지속 증액하였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00	'03	'05	'08	'11	'14	'17	'21	'22	'23	'24
금액	84	136	425	532	537	737	614	685	747	764	908

7) 환경부 제출자료

8)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자) ①지역지원사업, ②주민지원사업, ③기타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구분	사업	사업내용	시행자
지 역 협의회결정	지역 지원	·소득원 발굴, 영농시설 및 생활인프라 구축 등 지역단위 지원 ☞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주민 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단위 지원 ☞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수자원공사 (댐지사)
수 공 결 정	기타 지원	·지역상생사업, 법정사업, 홍보·거버넌스 운영 등 부대사업 ☞ 저수사용료보조, 사천만 인공방수로 지원, 물문화관 운영 등	수자원공사 (본사)

[참고자료 2]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⁹⁾

구 분		지방자치단체
한강유역	군남댐	(경기) 연천군
	한탄강댐	(경기) 연천군, 포천군 (강원) 철원군
	평화의댐	(강원)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소양강댐	(강원)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댐	(강원) 횡성군
	충주댐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금강유역	대청댐	(대전) 대덕구,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보령댐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용담댐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충남) 금산군
	부안댐	(전북) 부안군
영산강 섬진강 유역	섬진강댐	(전북)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주암댐	(전남)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곡성군
	수어댐	(전남) 광양시
	장흥댐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화순군
낙동강 유역	영주댐	(경북)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
	안동댐	(경북) 안동시, 봉화군
	임하댐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성덕댐	(경북) 청송군, 의성군, 영천시, 포항시, <u>안동시*</u>
	군위댐	(경북) 군위군, 영천시, 의성군
	보현산댐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천시, 포항시
	영천댐	(경북) 영천시, 포항시
	부항댐	(경북) 김천시
	운문댐	(경북)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합천댐	(경남) 합천군, 거창군
	사연댐	(울산) 울주군
	대곡댐	(울산) 울주군
	밀양댐	(경남) 밀양시, 양산시
	남강댐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주 1. 총 10개 시도, 59개 시·군·구

2. 안동시는 성덕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은 아니나 협의회를 통해 대상에 포함

3.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용수댐 9개소의 지원사업 구역 확정시, 지원사업대상에 해당 하는 기초지자체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9)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댐별 출연금 세부현황(2024년도)¹⁰⁾

(단위:백만원)

구분	출연금		
	댐용수매출(22%)	발전수익(6%)	계
다목적댐	63,263	23,598	86,861
소양강댐	11,561	7,717	19,278
충주댐	23,504	8,917	32,421
횡성댐	377	28	405
대청댐	5,210	1,255	6,465
섬진강댐	676	741	1,417
용담댐	2,853	1,169	4,022
주암댐	4,338	437	4,775
보령댐	1,048	—	1,048
부안댐	252	—	252
장흥댐	659	8	667
군위댐	182	4	186
부항댐	148	11	159
남강댐	1,127	338	1,465
보현산댐	110	5	115
성덕댐	77	7	84
안동댐	3,872	1,355	5,227
임하댐	1,856	246	2,102
합천댐	4,925	1,205	6,130
영주댐	—	105	105
밀양댐	488	50	538
용수댐	3,901	0	3,901
수어댐	1,235	0	1,235
영천댐	963	0	963
운문댐	1,202	0	1,202
대곡댐	148	0	148
사연댐	353	0	353
총 계	67,164	23,598	90,762

10) 환경부 제출자료